

경사리 결의 1220(XLII) 채택위해 22차 총회에 회부 결정

Report of the Joint Working Group of the Third and Sixth Committees on the draft convention on the non-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,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, Twenty-second Session, Annexes (XXII) 60, UN Doc. A/C.3/L.1503 (7 Dec. 1967).

제3위원회와 제6위원회 상의 끝에 협약 초안 준비위해 합동실무그룹 만들기로. 다호메이, 프랑스, 기테아, 인도, 레바논, 멕시코, 네덜란드, 페루, 필리핀, 폴란드, 소련, 통일아랍공화국(UAR), 영국, 탄자니아, 미국 등 15개 회원국으로 구성. 의장에 인도대표 라오(Krishna Rao), 부의장에 네덜란드의 쿠이즈만(P. H. Kooijmans) 선임. 11.20-12.7까지 활동, paras. 3-8.

협약초안은 para. 9.

전문 첫 번째 문장 - 아파헤이드, 토착주민 탄자니아 주장 8-2-4 채택, para. 13.

2nd, 3rd, 4th para. 만장일치

협약 6번째 12-0-3, para. 20(미국은 훨씬 낮은 강도 비난, 중대한 성격의 전쟁범죄로 제한)

마지막 전문 13-1-1, para. 21(미국 중대한 성격의 전쟁범죄(war crimes of a grave nature)로 제한)

전문전체 11-0-4로 채택, para. 24

정의문제, paras. 30, 34(영국 of a grave nature 또한 다른 나라 37 영미법상 crime은 felonies만이 아니라 misdemeanours도 포함), 38(이에 관한 기준 너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일부 전범의 불처벌을 허용하게), 38(폴란드, 소련 다른 입장), 39(다호메이-중대성의 기준으로 성격과 범위를 제시, 미 "grave breaches of the laws and customs of war"), 41(다호메이안 II, 10-3-2 채택).

인도에 반한 죄: paras. 42-(다양한 견해)-46(영국 국제협약에서 특정한 저악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협약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로 아파트헤이드 언급 삭제 요청 - 9(다호메이, 기네아, 인도, 레바논, 필리핀, 폴란드, 소련, UAR, 탄자니아)-2(네덜란드, 영국)-4(프랑스, 멕시코, 페루, 미국)로 부결, para. 49) 47("eviction by armed attack or occupation"은 UAR제안 레바논 찬성. deportation이나 persecution 해당할지라도 정확하게..9-0-6) 제1조 (b) 10(다호메이, 기네아, 인도, 레바논, 네덜란드, 필리핀, 폴란드, 소련, UAR, 탄자니아)-1(미국)-4(프랑스, 멕시코, 페루, 영국), para. 49.

제1조 전체 호명투표 8(다호메이, 기네아, 인도, 레바논, 폴란드, 소련, UAR, 탄자니아)-2(프랑스, 미국)-5(멕시코, 네덜란드, 페루, 영국), para. 53. 프랑스 표결설명(구체적